

#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**제1조(목적)**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.

## 제3조(급여범위)

-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'갑'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-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- ③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, 향상을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## 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① '갑'(또는 '병')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'을'에게 통보한다.
- ② '을'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'갑'과 '병'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## 제8조(이용료 납부)

- ① 통합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'을'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일에 정산하고 '갑'(또는 '병')에게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.
- ③ '갑'은 매월 이용료를 은행계좌로 익월 20일까지 납부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④ '을'은 '갑'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.

#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

○ 등급별 통합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※ 월 한도액의 최대 120%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가급여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 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<br>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<br>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 6%<br>9% |

○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| 구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1등급    | 2등급    | 3등급    | 4등급    | 5등급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주야간<br>보호 | 3시간이상<br>~6시간미만     | 39,810 | 36,850 | 34,020 | 32,470 | 30,920 |
|           | 6시간 이상<br>~8시간 미만   | 53,360 | 49,420 | 45,620 | 44,070 | 42,500 |
|           | 8시간 이상<br>~10시간 미만  | 66,360 | 61,480 | 56,760 | 55,210 | 53,640 |
|           | 10시간 이상<br>~13시간 이하 | 73,110 | 67,720 | 62,570 | 61,000 | 59,450 |
|           | 13시간 초과             | 78,400 | 72,630 | 67,100 | 65,540 | 63,990 |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방문<br>요양 | 30분            | 16,630 |
|          | 60분            | 24,120 |
|          | 90분            | 32,510 |
|          | 120분           | 41,380 |
|          | 150분           | 48,250 |
|          | 180분           | 54,320 |
|          | 210분           | 60,530 |
|          | 240분           | 66,770 |
| 방문<br>목욕 | 차량이용<br>(차량 내) | 84,670 |
|          | 차량이용<br>(가정 내) | 76,340 |
|          | 차량<br>미 이용     | 47,670 |